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정관

(1994년 10월 15일) 제정

(1998년 10월 30일) 개정

(2014년 06월 13일) 개정

(2015년 06월 1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KREA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부동산학의 연구와 전파를 통하여 부동산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회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동산학의 연구
2. 부동산학 연구지의 발간
3. 부동산학의 전파를 위한 교육
4. 부동산학에 관련된 학술회의
5. 부동산학 교재의 공동 편찬
6.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의 학술교류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4조(사무소)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제2공학관 617호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제3항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본 학회의 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

1. 부동산학 또는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정규대학과정에서 부동산학 또는 인접 학문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거나 유관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부동산관련분야에 근무한 자
3. 부동산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본 학회의 준회원으로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기초교육을 필하였거나 준회원이 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5. 기타 이사회가 특별히 자격을 인정한 자

나. 준회원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부동산관련 학과에 재학하거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단체 및 법인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활동과 회의에 참여하는 등의 권리를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은 저서와 논문의 간행, 학술회의 참여 등의 경우 본 학회의 회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및 징계)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의 회원에 대하여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1. 포상(학술상, 공로상 등):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큰 자

- 2. 징계(경고, 제명 등): 본 학회의 발전을 현저히 저해한 자

제 3 장 조 직

제8조(총회)

- ① 본 학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최고의 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 1. 정관의 변경
 -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 3. 임원의 선출
 - 4. 기타 주요사항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제2항에 규정된 회원들의 요구에 의한 총회는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를 요구한 회원들이 당해 총회의 소집권을 가진다.
- ④ 회장은 적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타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경우에는 회원들이 선임한 대표자가 의장이 된다.

제9조(임원)

- ① 본 학회는 회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이사로 본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의 수석부회장, 1인의 학계 대표 부회장, 1인의 산업계 대표 부회장, 당연직 부회장(지회장)
 - 3. 상임이사 : 50인 이내
 - 4. 이사 : 150인 이내
 - 5. 감사 : 2인 이내

- ②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으로 본회 운영상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의 자격은 각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원과 부동산관련 업체대표 및 임원으로 한다.
- ④ 법인 임원등기 시 회장, 부회장만을 등기이사로 한다. 단, 당연직 부회장 및 일반 이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제10조(회장)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집행하는 책임을 지며, 회장(회장 후보자 포함)은 총회에 대해 임원 임명제청권을 갖는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학계 대표 부회장, 산업계 대표 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이사회)

- ① 본 학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의안
 - 2. 규정의 제정과 개폐
 - 3. 본 정관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 4. 회장, 부회장 후보의 선출
 - 5. 지회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 7. 고문, 자문위원, 연구위원의 위촉 등 업무집행 결의
 - 8.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경우에는 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총괄할 운영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사들에게 업무를 분장시킬 수 있다.

제12조(감사)

- ① 감사는 본 학회의 운영과 재무상황에 관하여 감사권을 가진다.
- ②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고문 등)

- ① 본 학회는 부동산학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추었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 운영위원 등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③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연구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등)

- ① 본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국제위원회, 운영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미래위원회를 둔다.
- ②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하부조직으로서 지회, 위원회, 부설 연구소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폐지할 수 있다.
- ③ 지회, 위원회, 부설 연구소 등의 조직, 운영,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되 지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④ 이사 중에서 위원장, 연구소장 등을 임명 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⑤ 각 위원회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각 위원회는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주관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회장이 5명 이상으로 임명하되, 학회임원, 편집위원회 위원,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중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 및 발행을 주관한다.
- ② 편집위원의 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④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학술위원회)

- ① 학술위원회는 세미나 개최, 학술대회 개최 등 학회의 학술활동을 주관한다.
- ② 학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국제위원회)

- ① 국제위원회는 해외 연구단체와의 교류, 국제세미나의 개최 등 학회의 해외 활동을 주관한다.
- ② 국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처리 업무와 회비의 결정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산학협력위원회)

- ① 산학협력위원회는 학회 사업 중 본 학회와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 ② 산학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미래위원회)

- ① 본 학회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 및 부정기

적으로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행사 등 학회 미래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 ② 미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지회)

- ① 지회는 지역 이름(OO)을 포함하여 반드시 「OO부동산분석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지회는 본 학회의 정관과 제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규약과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지회가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회의 총회 전에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지회의 조직, 운영, 회계 등에 관하여 본 학회가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 준한다.
- ④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하며 본 학회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원수가 30인 이내인 소규모 지회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지회장을 임면한다.
- ⑤ 기타 지회의 설립과 해산, 그리고 지회장의 선출과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사무국) 본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사 무

제24조(사무처리) 사무국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회원의 명부
- 2. 예산과 결산 및 주요 부속서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 3. 사업계획과 그 집행내역서
- 4. 회의록
- 5. 기타 회장이 정한 서류

제25조(회계)

- ① 본 학회의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②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 ③ 본 학회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26조(특별회계)

- ① 본 학회는 필요시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특별회계는 본 학회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7조(해산) 본 학회가 해산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각기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8조(법령의 적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본 학회는 「부동산학을 생각하는 모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2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4년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정관 제1조의 사단법인이란 칭호는 본 학회가 사단법인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사용한다.

제2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승인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7. 11. 30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연구윤리)

- ① (연구의 정직성) 본 학회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회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회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이중 투고,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 편수 늘리기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연구의 공개성) 본 학회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 (위조)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제4조 (변조)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데이터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5조 (표절)

- ① 표절이란 함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 ③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 ④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6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이중 투고)

이중 투고란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제8조 (중복 게재)

- ① 중복 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 ② 다음과 같은 논문이나 보고서를 그대로 옮긴 논문, 또는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에 이러한 사실을 명기한 경우 중복 게재로 보지 않는다.
 - 1.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 2. 연구보고서
 - 3. 석·박사 학위논문

제9조 (부당한 논문 편수 늘리기)

- ① 부당한 논문 편수 늘리기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유사한 논문이란 논문의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자료, 연구 범위, 연구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현격한 차이가 없는 논문을 말한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처리 절차

제10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제3조 내지 제9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이를 편집위원회에 제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편집위원회의 조사)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이 조사 대상자일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1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의결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의 2/3 이상 출석에 출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며, 해당 논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의결에 앞서 소명기회를 주어야 있다.

제1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 정지)

-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자일 경우, 해당 위원의 자격은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자격 정지될 경우, 이 위원은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4조 (이의 신청)

-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 재확인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보장의 의무)

-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과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증거 확인에 도움을 준 사람 등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별 칙

제1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 ① 본 학회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7조, 그리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2.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1년간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②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본 학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 2.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 3. 해당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4. 해당 저자가 본 학회 회원일 경우, 학회 내 모든 직책이나 직위를 박탈한다.

제17조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제14조의 비밀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제3조 내지 제5조(단, 단서조항은 제외), 그리고 제8조의 연구부정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한다.

「부동산학연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규정

1994. 12. 01 제정
1997. 10. 01 개정
2002. 12. 31 개정
2004. 12. 31 개정
2005. 05. 20 개정
2007. 02. 28 개정
2007. 08. 30 개정
2007. 11. 30 개정
2009. 12. 1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학회지 명칭은 “부동산학연구(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라 칭하고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3조 (구성) 본 학회지는 논문(일반연구·정책연구), 보고, 논평, 서평 및 연구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 부동산학 분야의 학술 및 정책연구 결과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2. 보고 : 일반적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로 부동산학 분야의 새로운 학설이나 기법, 부동산 실무 분야의 동향 등을 소개할 목적으로 서술된 글.
3. 논평 : “부동산연구”에 실린 논문(보고)에 대한 공개 논평과 반응, 혹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논평을 목적으로 하는 단편의 글.
4. 서평 : 국내외 신간 도서에 대한 소개나 논평을 목적으로 하는 글.
5. 연구자료: 부동산학연구에 유용한 문헌정보 혹은 통계 등의 연구자료.

제4조 (발행일과 회수) 본 학회지는 연4회 발간하며, 발간예정일은 3월, 6월, 9월, 12월 말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5조 (조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2인 이내, 그리고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회계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의뢰,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중재 의뢰,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게재 논문의 선정, 게재 순서의 결정, 학회지 발행부수에 대한 결정, 투고료 및 심사료의 결정,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료조사 및 징계요청, 논문작성요령 제·개정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소집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학회지에 실리는 논문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학회지 발간에 따른 제반 회계와 행정실무를 관장한다.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간사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 관련자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편집위원 선출기준) 편집위원은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갖춘 자로, 지역과 대학 그리고 전공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선출한다.

제8조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9조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3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의 개최일은 투고논문의 양과 학회지 발간일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위원이 모일 수 있는 날로 결정하여 위원장이 통보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회의의 판결은 (위임 포함) 편집위원 2/3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비) 회의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논문투고절차

제12조 (투고 자격) 본 학회지의 투고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반드시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 (투고 시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투고논문 접수일은 해당 원고와 심사료가 모두 학회지 편집위

원회에 도착(및 입금)한 날로 한다.

제14조 (논문투고 양식) 투고 논문은 본 학회의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투고 방법) 투고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논문게재신청서 등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심사료를 납부하였을 때 투고로 인정한다.

제16조 (원고접수 및 통지) 편집위원장은 제14조와 제15조의 논문투고조건을 충족시킨 논문에 대하여 그 투고자에게 2주일 이내에 원고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논문심사절차

제17조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주제에 따라 적임 심사위원을 3인 이상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8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하여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는 심사서 양식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1. 연구주제의 필요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선행연구 검토의 적절성
4. 내용 전개의 논리성
5.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6. 논문작성규정 준수정도

제19조 (심사 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를 다음 중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수정후 게재의 경우에는 수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수정후 재심이나 게재불가의 경우에는 상당한 논거와 설명을 심사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1. 게재가 : 수정없이 게재 판정
2.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판정
3.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사를 통해 게재 여부 판정

4. 게재불가 : 재심사 없이 게재 불가로 판정

제20조 (게재여부 판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심사결과	판 정
○○○	게재가/수정후 게재
○○△	게재가/수정후 게재
○○x	게재가/수정후 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x	수정후재심
△△x	수정후재심
○xx	게재불가
△xx	게재불가
xxx	게재불가

- :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가
- △ : 수정후 재심
- X : 게재불가

2.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고, 1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가 판정을 내린다.
3.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게재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과 게재불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재심사시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4.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보완을 통해 다시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연구 방법이나 연구결과 등에서 기존 논문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고 심사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5. 심사표 상 수정후 게재에 속하는 논문이라 하더라도 게재불가 의견을 낸 심사위원이 있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21조 (반론과 중재)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이유에 대하여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혹은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이 때에는 상당한 논거나 실증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에 가능한 통신방법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중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제22조 (이의 제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게재 여부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3조 (원고 게재)

1. 원고의 게재 순서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심사가 완료되어 발간이 가능한 원고부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도록 한다.
2. 동일한 호수의 학회지에 단독연구로 1인이 2편 이상을 게재할 수 없으나,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제24조 (심사료와 게재료)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료와 게재료를 매년 결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징수한다.

제25조 (별쇄) 삭제

부 칙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30)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사회가 상임이사회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동산학연구」 논문작성요령

2007. 06. 30 제정

2007. 11. 30 개정

1. 논문의 체계

논문은 다음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1) 논문의 한글 제목(영문 논문일 경우 영문 제목)
 - 논문 제목에 대한 설명(예를 들어 'XXX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이다' 또는 '본 논문의 심사를 맡아 주신 익명의 심사자...' 등)이 필요할 경우,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번호 없는 각주로서 * 표시) 형태로 작성한다.
 -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한다.
- 2) 논문의 영문 제목(영문 논문일 경우 한글 제목)
 -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한다.
- 3) 한글 저자명과 괄호 속 영문 저자명(영문 논문일 경우 영문 저자명만 작성)
 -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번호 없는 각주로서 **, *** 등으로 표시) 형태로 저자의 근무처와 지위, 그리고 e-mail 주소 등을 작성한다. 영문 논문일 경우 영문으로 표기한다.
 - 영문 저자명은 성(last name), 이름(first and second name)의 순으로 작성한다.
 -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제1저자, 제2저자의 순으로 줄을 바꾸어 작성한다.
예) 김문성(Kim, Moonsung)
이하나(Lee, Hana)
 - 우측 맞춤 정렬을 한다.
- 4) 영문 요약문(영문 논문일 경우 한글 요약문)
 - Abstract 라고 표기하고 한줄 띄어서 영문 요약문을 작성한다.

- 좌측 맞춤으로 정렬한다.

- 5) 한글 키워드와 영문 키워드(영문 논문일 경우 영문 키워드와 한글 키워드)
 - 한글 키워드는 '주제어 : ' 라고 표기하고 5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 영문 키워드는 'key word : ' 라고 표기하고 5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 한글 키워드와 영문 키워드는 순서나 의미가 동일해야 한다.
 - 좌측 맞춤으로 정렬한다.
- 6) 본문
- 7) 참고문헌
- 8) 부록(부록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2. 본문 작성 요령

- 1) 본문의 장, 절, 항, 목 등의 제목은 다음의 표기 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장 : I II ...
절 : 1. 2. ...
항 : 1) 2) ...
목 : (1) (2) ...
추가적인 분류가 필요할 경우 ①, ② ...으로 표기한다.
- 2) 장, 절, 항, 목 등의 제목은 좌측을 기준으로 정렬한다.

- 3) 장과 절 제목 다음에는 한 줄을 건너 띄고 본문을 시작한다. 항 제목 이하부터는 그 다음 줄부터 본문을 시작한다.
- 4) 모든 문장(장, 절 등의 제목 포함)은 좌측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작성하되, 문장 첫 줄의 첫 단어는 두 칸 들여쓰기를 하여 작성한다.

<예>
 I. 서론
 1. 논문 작성 요령
 1) 장과 절의 매김 방법
 장과 절 제목 다음에는 한 줄을 건너 띄고 본문을 시작한다. 항 제목 이하부터는 그 다음 줄부터 본문을 시작한다.

- 5) 한글 논문에서 한자 표기가 필요할 경우 괄호 속에 표기한다. 일단 한자 표기를 한 뒤에는 한자 표기 없이 한글만 사용해도 된다.
 - 예 : 한자(漢字) 표기가 필요할 경우, 괄호 속에 한자를 표기한다.
- 6) 한글 논문에서 일반화된 영어식 단어가 아닌 영어 표기가 있을 경우 한글로 번역하거나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되 괄호 속에 영문 표기를 병기한다. 일단 영문 표기를 한 뒤에는 영문 표기 없이 한글만 사용해도 된다.
 - 예 : 그랜저의 인과관계 검정(Granger's Causality Test)

3. 각주 작성 요령

- 1) 각주는 각 페이지의 하단에 작성한다. 미주를 작성하지 않는다.
- 2) 각주 순서대로 반 괄호로 번호를 매기며, 두 번째 줄부터는 들여쓰기를 하여 첫 번째 줄 첫 단어의 위치와 일치하도록 한다.

<예>

- 1) 각주 순서대로 반 괄호로 번호를 매기며, 두 번째 줄부터는 들여쓰기를 하여 첫 번째 줄 첫 단어의 위치와 일치하도록 한다.

4. 인용문 작성 요령

- 1) 인용 저자를 본문이나 각주 중에 기술할 경우, 저자명(영문 저자의 경우 last name)을 쓰고 괄호 속에 연도를 표시하여 작성한다.
 - 예 : 홍길동(1997)에 따르면, ...
 - 예 : Case(2007)에 따르면, ...
- 2) 인용문구를 작성한 후, 괄호 속에 저자를 표시할 경우 저자, 연도의 순으로 표시한다.
 - 예 : ...하였다(홍길동, 1997)
- 3) 동일저자의 동일연도 저서나 논문을 구별해야 할 경우 연도 뒤에 a, b, c의 순으로 표기하여 구분한다.
 - 예 : 홍길동(1997a)에 따르면....
- 4) 인용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가운데 점(·)으로 저자를 구분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 last name만 쓰고 쉼표(,)나 and로 저자를 구분하여 쓴다.
 - 예 : 홍길동·이진서(1996)에 따르면, ...
 - 예 : Case and Shiller(1997)에 따르면, ...

5. 표와 그림 작성 요령

- 1) 표와 그림의 제목은 일련 번호를 붙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표의 경우 : <표 1> <표 2> 등
 - 그림의 경우 : <그림 1> <그림 2> 등
- 2) 표와 그림의 제목은 해당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위치시키며, 가운데 정렬을 한다.
- 3) 표의 경우 테두리 선 종류나 두께 등에서 논문 전체에 걸쳐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 4) 표의 경우 본문의 글자크기나 형태가 같아야 하나, 특별한 경우 글자 크기나 형태를 바꿀 수 있다.
- 5) 표의 첫 행과 첫 열은 구분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 6) 그림은 인쇄제판용 원고로 직접 사용할 수 있을 해상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림은 가급적 흑백 인쇄에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색깔을 사용할 경우, 흑백 인쇄에서 구별이 안 될 수 있다.
- 7) 표나 그림을 인용할 경우, 각 표나 그림 하단에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출처 표시는 정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출처를 각주로 표시할 수도 있다.
 - 예 : 출처 : 홍길동(1997), p. 25

6.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 작성 순서

- 먼저 참고문헌이라고 표기하고, 한 줄 건너서부터 참고문헌을 작성한다.
- 한글 문헌, 영문 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동양 문헌(일본어, 중국어)이 있을 경우, 한글 문헌 다음에 동양문헌을 먼저 작성하고 난 후, 영문 문헌을 작성한다.
- 한글 문헌은 저자(제1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작성한다.
- 영어 문헌을 저자(제1저자)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 동양 문헌이 있을 경우(일본어, 중국어) 이름의 한글 발음을 가나다 기준으로 순서를 매긴다.

2) 한글 문헌의 작성 방법

-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가운데 점(·)으로 이름을 구분한다.
-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각종 기고문, 신문기사, 보도자료 등의 제목은 양 따옴표(“ ”)로 표기한다.
- 학술지, 저서, 보고서, 통계집, 정기간행물(주간지, 월간지 등), 기타 책자의 제목은 양 꺾쇠(「 」)로 표기한다.
- 책자라고 보기 어려운 자료집(세미나 자료집,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Working Paper 등)이나 신문 등은 특별한 표식 없이 표기한다.

- 학술지 논문은 해당 논문이 실린 페이지를 표기한다(2008년부터 실시).
- 웹 사이트(Web Site)는 해당 웹 사이트 제목을 적고, 주소를 작성한다.
 - 예 :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표기방법 :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이름」 권 호, 학술단체 이름 또는 출판사 이름, 년도, pp. 페이지의 순으로 작성한다.
 - 예 : 정수연, “한국 상장, 코스닥 기업의 입지 이전결정요인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4집 제1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8, pp. 65-80

- 학위논문의 표기 방법 : 저자, “논문 제목”, 학위수여학교 및 학위 논문 표시, 년도

예 : 이영, “부동산가격에 관한 연구”, ○○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저서 표기 방법 : 저자, 「책제목」, 출판지 : 출판사명, 년도(단, 출판지는 생략하여도 좋다)의 순으로 작성한다.

예 : 이정진, 「토지경제학」, 박영사, 1997

- 보고서, 통계집 표기 방법 : 저자, 「책제목」, 보고서 발행 기관, 년도(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고서 발행기관, 「책제목」, 년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 대한주택공사, 「주택통계편람」, 2000

- 신문 기사, 정부 보도자료 등 : 저자, “제목”, 발행지 또는 발행처, 연월일(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발행지 또는 발행처, “제목”, 자료 정의, 연월일)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 건교부, “10.26 대책의 의미와 파장”, 건교부 보도자료, 2005. 10. 26

3) 영문 문헌의 작성 방법

-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콤마(,)나 and를 사용하여 병기한다.
- 제1저자의 이름은 last name을 먼저 적고, 그 다음 first name과 second name을 적는다.
- 제2저자부터는 first name, second name, last name 순으로 적는다.

-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각종 기고문, 신문기사, 보도자료 등의 제목은 영문의 양 따옴표(“ ”)로 표기한다.
- 학술지, 저서, 보고서, 통계집, 정기간행물(주간지, 월간지 등), 기타 책자의 제목은 이태리체로 표기한다.
- 책자라고 보기 어려운 자료집(세미나 자료집,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Working Paper 등)이나 신문 등은 특별한 표식 없이 표기한다.
- 논문, 저서 등의 제목은 전치사나 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단, 전치사나 관사라 하더라도 제목의 첫 글자일 경우 대문자로 시작한다.
- 학술지 논문은 해당 논문이 실린 페이지를 표기한다(2008년부터 실시).
- 웹 사이트(Web Site)는 해당 웹 사이트 제목을 적고, 주소를 작성한다.
-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표기방법 :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이름, 권 호, 년도, pp. 페이지의 순으로 작성한다.
 예 : Case, Karl E., Robert J. Shiller, “The Efficient of the Market for Single-Family Hom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9 No. 1, 1989, pp. 125-137
- 단, 학술지의 No.를 쓰지 않더라도 해당 논문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No.와 관계없이 연속하여 페이지를 매기는 학술지 또는 연도 앞에 학술지가 발행된 달을 표시하는 경우) No.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저서 표기 방법 : 저자, 책제목, 출판지:출판사명, 년도(단, 출판지는 생략하여도 좋다)의 순으로 작성한다.
 예 : Mankiw, N. Gregory, *Principles of Economics*, The Dryden Press, 1998
- 논문이 편저된 책자에서 나온 경우의 표기 방법 : 저자, “논문 제목,” 편저자 이름, 저서 제목, 출판사, 연도, pp. 페이지의 순으로 작성한다.
 예 : Ames, Chris,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Fabozzi, F. J. and I. M. Pollack ed., *The Handbook of Fixed Income Securities*, Dow Jones Irwin,

- 1997, pp.569-597
- 기타 영문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위의 참고문헌 작성 방법에 준한다.
- 4) 동양권 참고문헌의 작성 방법
 - 한글 참고문헌의 작성 방법에 준한다.
- 5) 동일저자, 동일년도의 논문을 2개 이상 참고문헌에 표기할 경우
 - 년도 뒤에 a, b 등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6) 참고문헌 번호 표기
 - 참고문헌의 순서에 따라 해당 참고문헌 첫 머리에 1. 2. 3. 등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를 표시한다.
 - 하나의 참고문헌이 2 줄 이상에 걸쳐 표기될 경우, 2번째 줄부터는 들여쓰기를 하여 첫줄 저자의 이름위치와 일치하도록 한다.

<예 > 참고문헌 1. 김문성, “부동산가격 결정에 관한 연구”,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2.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1997 3. Case, Karl E., Robert J. Shiller, “The Efficient of the Market for Single Family Homes,” <i>The American Economic Review</i> , Vol. 79 No. 1, 1989, pp. 125-137
--

- 7) 참고문헌에 표기하여야 할 문헌들
 - 참고문헌에는 반드시 본문에서 언급된 참고문헌만 포함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 본문에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문헌에서 제외된 문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칙 (2007.11.30)

본 요령은 「부동산학연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명칭을 「부동산학연구」 원고작성규정에서 「부동산학연구」 논문작성요령으로 변경한다.

<별첨 1> 「부동산학연구」 논문게재신청서

논문게재신청서

성 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직 장	소 속	한글: _____ 영문: _____	직 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주 소	(전화) (e-mail)		
논문제목	한 글	_____		
	영 문	_____		
논문개요				
	중요어	(한글) _____ (영문) _____		
분 류	유 형	_____		
	주 제	_____		
작성언어	_____			
위와 같이 「부동산학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인)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편집위원장 귀하				

<별첨 2> 「부동산학연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귀하

논문제목:

국 문:

영 문:

저자들은 본 논문이 (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서약합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의 작성과정에서 (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의 투고 및 게재에서 (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이중투고,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연구윤리 준수 CHECK LIST	
『부동산학 연구』 연구윤리규정 확인여부	- 『부동산학 연구』 연구윤리규정을 확인 하였습니다습니까? 예 () 아니오 ()
중복 게재(예정) 여부 (표절 포함)	- 투고논문과 같은 논문(본인 논문 또는 타 저자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입니까? 예 () 아니오 () ※ 중복 게재(예정)라는 사실이 심사 중 또는 게재 이후라도 밝혀지면 본지 규정에 따라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별도의 조치(불이익)를 취하게 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저 자	이 림	소속 및 직함	전화번호	서 명

<별첨 3> 「부동산학연구」 저작권 이용 동의서

저작권 이용 동의서

(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귀하

논문제목:

국 문:

영 문:

저자들은 본 논문이 (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저작권 이용에 관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학회지인 부동산학연구에 게재될 경우, (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본 논문의 모든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 (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는 저자(들)나 (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전화번호	서명

<별첨 4> 「부동산학연구」 투고논문 심사서

부동산학연구 투고논문 심사서

논문 제목	
논문 유형	이론적 (), 정책적 (), 분석적 (), 기 타 ()

심 사 항 목	심 사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연구주제의 필요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선행연구검토의 적절성					
내용전개의 논리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논문작성규정 준수정도					
영문초록의 적절성					

* 논문 유형에 따라 심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심사결과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심사평(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필요시 별지 사용)

본 학회지 투고논문에 대해 이상과 같이 심사하였음.

201 년 월 일

심 사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거래은행	예 금 주	계좌번호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편집위원장 귀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임원진 명단

고 문	이태교 서울부동산포럼	이춘섭 건국대학교	안정근 한성대학교
	조주현 건국대학교	노태욱 강남대학교	손재영 건국대학교
	김경환 국토교통부	이용만 한성대학교	
명 예 회 장	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회 장	이창무 한양대학교		
수 석 부 회 장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 회 장	이상영 명지대학교		
대 구 경 복 지 회 장	서경규 대구가톨릭대학교		
부 산 영 남 지 회 장	강정규 동의대학교		
감 사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김종진 전주대학교	
편 집 위 원 회	위원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위원장 민성훈 수원대학교	부위원장 방승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운 영 위 원 회	위원장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위원장 김성희 안양대학교	부위원장 김 진 한남대학교
학 술 위 원 회	위원장 김진유 경기대학교	부위원장 고진수 광운대학교	부위원장 박지윤 DTZ
대 류 교 류 위 원 회	위원장 최창규 한양대학교	부위원장 진창하 한양대학교	부위원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국 제 위 원 회	위원장 정수연 제주대학교	부위원장 이재순 부동산연구원	부위원장 이 진 부동산연구원
교 육 위 원 장	위원장 박태원 광운대학교	부위원장 노승철 서울연구원	부위원장 이재수 강원대학교
부 동 산 산 업 의 날 제 정 특 별 위 원 회	위원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부위원장 노승한 건국대	부위원장 김미경 주택산업연구원
AsRES 2018 실무운영 위원회	특임위원장 정수연 제주대학교	자문위원 김관영 리츠협회	
	위원 이창무 한양대학교	위원 이상영 명지대학교	위원 김갑성 연세대학교
	위원 김준형 명지대학교	위원 노승한 건국대학교	위원 진창하 한양대학교
	위원 (간사) 이재순 부동산연구원	위원 이 진 부동산연구원	위원 이진만 DePaul University
상 임 이 사	국기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권대철 국토부토지국장	김갑성 연세대학교
	김갑열 강원대학교	김승배 피데스개발	김용순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용창 서울대학교	김현아 국회의원	김호철 단국대학교
	박상우 LH공사사장	박환용 가천대학교	백성준 한성대학교
	변창흠 SH공사	부창렬 서울부동산포럼회장	서종대 한국감정원
	서후석 명지전문대학교	손경환 LHI원장	신종웅 DTZ Korea
	신종철 건국대학교	이찬호 부산대학교	정성용 대구대학교
	정의철 건국대학교	정창무 서울대학교	정희남 국토연구원
	조 만 KDI정책대학원	채미옥 한국감정원원장	최막중 서울대학교
	이 사	강승일 코람코	강원철 고려사이버대학교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과장	김용경 서울특별시주택정책실
김유동 대화감정평가법인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김주영 상지대학교
김준형 국제위 부위원장		김지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김학환 송실사이버대학교
김행중 세명대학교		김형순 지우감정평가법인	김형주 상명대학교
나상수 대한감정평가법인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민태욱 한성대학교
박래익 GIC Real Estate Korea		박상학 LH토지주택연구원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박 준 서울시립대학교		박천규 교육특별위 부위원장	방두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백민석 세명대학교		변세일 국토연구원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손진수 명지전문대학교		송준혁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승우 건국대학교
신우진 전남대학교		심형석 영산대학교	양승철 학술위 부위원장
유선중 건국대학교		유정석 편집위 부위원장	유주연 벽성대학교

이 사	윤여신	젠스타프로퍼티	윤영식	아주대학교	이상엽	건국대학교
	이성원	편집위 부위원장	이영수	서울디지털대학교	이영수	영산대학교
	이재우	목원대학교	이재웅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정민	경희사이버대학교
	이준용	한국감정원	이진경	국제위 위원장	이창우	한국지역개발연구소
	임미화	단국대학교	임병준	한성대학교	장희순	강원대학교
	정문오	한국감정원	정상국	대구대학교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유신	서강대학교	정준호	강원대학교	정창원	MBN 보도국 경제부 부장
	조덕훈	세종사이버대학교	조성근	한국경제신문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최성호	KCB	한상훈	중원대학교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홍정의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부동산학연구』 역대 우수논문

행사	상장	논문명	계재호	소속	저자
2016	최우수논문상	한국 주택 가격의 경기 순환: 특징 및 함의	21집4호	한양대학교	황영진
	우수논문상	오피스시장의 전환을 추정 및 유용성 검증	21집4호	수원대학교	민성훈
	우수논문상	주택수요 정책이 신규 아파트 미분양률에 미친 효과 연구	22집2호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혁신 방두완
2015	최우수논문상	주택시장의 과신과 가격거품	21집 1호	성균관대학교	신진호 황수성
	우수논문상	주거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한 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	21집 1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창형
	우수논문상	전세가격에 포함된 주택가격 변동 정보에 관한 연구	21집 1호	전남대학교	김정화 배광일
2014	최우수논문상	임차인 설문조사를 통한 월세미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집 3호	한양대학교	위정환, 류강민 이창무
	우수논문상	동태적 모형 선택법을 이용한 주택가격 예측 변수 분석	19집 4호	한양대학교	황영진
	우수논문상	초기 주택가격 형성이 가격 주기 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9집 4호	단국대학교	김대원 유정석
2013	최우수논문상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스타일 분석에 관한 연구-규모 및 가치 성장 인자의 유용성-	18집 4호	수원대학교 건국대학교	민성훈 고성수
	우수논문상	공간자기상관을 고려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매매가 및 임대료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19집 2호	가천대학교	임필재 이상경
	우수논문상	외지인은 부동산을 비싸게 매입 하는가-제주도의 아파트 시장에 대한 실증 분석	19집 3호	한성대학교	방송희 이용만
2012	최우수논문상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8집 2호	건국대학교	정의철
	우수논문상	아파트 실거래가와 거래량이 시세에 미치는 영향	18집 2호	코리아크레딧뷰로 경기대학교	최성호 김진유
	우수논문상	통화정책 전달에서의 주택가격의 역할	학술대회	아주대학교 한성대학교	최희갑 임병준
2011	최우수논문상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주거실태 및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방안	17집 1호	성동구청 서울시립대학교	홍성범 오동훈
	우수논문상	아파트 분양마케팅 활동과 초기계약률에 관한 연구	17집 3호	건국대학교	백민석 신종칠
	우수논문상	주택가격변화가 가구의 저축 및 자산축적에 미치는 영향	17집 1호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임미화 정의철
2010	최우수논문상	자가주택소유의 목리적 소득을 고려한 소득불평등 연구	15집 3호	건국대학교	정의철 김진욱
	우수논문상	경매시장의 주택가격지수 추정에 관한 연구	16집 2호	한성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성대학교	이해경 방송희 이용만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기관 회원명단

	기관명	대표	주소	대표전화
1	국립중앙도서관	임원선	서울 서초구 반포로 664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자료과	02-535-4142
2	국회도서관	이은철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정기간행물 담당자앞	02-788-4211
3	한국부동산연구원	정낙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50 (방배동 1022-6) 1층 부동산정보센터 정한영 과장	02-520-5000
4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선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1 대한주택보증빌딩 7층 신사업개발실 연구기획팀	051-955-5612
5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재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 YTN빌딩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051-663-8401
6	한국감정평가협회	국기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50 한국감정평가협회	02-521-0900
7	한국감정원	서종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0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053-663-8720
8	대일감정원	김재철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83, A동 2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02-2105-6500
9	제일감정평가법인	김준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4-4 덕산빌딩 3층	02-3019-1200
10	제이알투자운용	김관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언주로 삼봉빌딩8층	02-564-7004
11	(주)우미건설	이석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우미사옥	1588-9950